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2월 1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일·가정 양립, 일·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근무형태에 맞추어 지원금액을 다양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규직 정의 정비(안 제2조제5호)
- 주민고용보조금 지원금액의 다양화를 위해 “월50만원”을 “월50만원 이내”로 변경(안 제7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실제 현장의 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로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일정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
- 주요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제4호 중 “기업에게”를 “기업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”을 “보장되는”으로 개정하고

'-에'와 '-에게'의 차이점에 대한 어문규정 설명

1. '-에' ⇨ 처소, 시간, 방향, 목적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.

- * 처소 : 어떤 장소나 위치를 나타냅니다. (예: 학교에 간다, 책상 위에 있다)
- * 시간 : 어떤 시간이나 시점을 나타냅니다. (예: 아침에 일어난다, 10시에 만나다)
- * 방향 : 어떤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냅니다. (예: 서울에 간다, 성공에 도전한다)
- * 목적 :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. (예: 공부에 집중한다, 건강에 좋다)

2. '-에게' ⇨ 수여격 조사임.

- * 대상 : 어떤 대상에게 향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냄. (예: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,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린다)

정규직(기간을 정하지 아닌한 것)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.

○ 안 제2조 관련(정규직 정의 정비)

구 분	현행 조례	개정 후
제2조 제5호	5. “정규직”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.	5. “정규직”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.

- 안 제7조제1항 중 “기업에게”를 “기업에”로, “월50만원”을 “월50만원 이내”로 함.

○ 안 제7조 관련(지원금액 조정)

구 분	현행 조례	개정 후
제7조	7.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.	7. 구청장은 금천구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유관기관 업무 회의 및 설문조사 자료등을 토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무자(예시 주30시간 근무자)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.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조례는 없으나,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고용보조금 유사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는 도봉구, 동작구 2개 자치구가 있음.

자치구	사업명	추진근거	2024년 예산
동작구 (일자리정책과)	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*2024년 첫 시행	「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」 ※ 3인 이상 중소기업 3,612개월 분할지급 총 510만원 최대 2인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	153,000천원 *24년도 예산 70% 이월
도봉구 (지역경제과)	희망장려금 *2022년 첫 시행	「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」 ※ 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상 1인당 50만원 6개월, 최대2인	75,000천원
경기 과천시	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	「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※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기업 월 최저임금의 50% 이하 지원	310,000천원
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